

조치명령서

소유자	성명(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)
대상 건축물	[] 허가 번호, [] 신고 번호 건축물의 위치
조치명령 내용	철거 등 조치명령의 이행기간
	철거 등 조치명령의 내용
	철거 등 조치명령의 사유
	그 밖에 필요한 내용

「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」 제1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라
위와 같이 해당 건축물의 철거 등 조치를 명합니다.

년 월 일

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
시장·군수·구청장



유의사항

- 빈집의 철거 등 조치명령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조치명령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·군수등에게 「행정절차법」 제27조에 따른 의견제출을 할 수 있습니다.
- 철거 등 조치명령의 이행기간 내에 철거 등 조치명령을 이행할 수 없는 소유자는 그 이행기간을 연장하려면 이행기간 종료 7일 전까지 시장·군수등에게 이행기간의 연장을 신청하여야 합니다.